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59411, 2023가단64994(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법무법인(유한)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훈

2. B

3. C

원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A

담당변호사 D

원고 2,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재훈

피고E

변론 종결2024. 9. 26.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 원고 법무법인(유한) A의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유한) A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여수시 G 대 495m²에 관하여 2020. 6. 8.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12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3. 6. 27. 접수

제10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 법무법인(유한)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법무법인(유한) A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여수시 G 대 4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6. 8.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각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12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23. 6. 27. 접수 제10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병합된 소]

주문 제3의 가., 나.항1)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무법인(유한) A(이하 '원고 법무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1) ① 원고 법무법인과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고 한다)은 2018. 4. 12. 원고 법무법인이 F에게 427,069,221원을 이자연 24%, 변제기 2018. 4. 1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I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290호)를 작성하였다. 또한 ② 원고 법무법인은 F을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가소11230),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30. 'F은 원고 법무법인에게 1,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 법무법인은 위 1)항 기재 ①, ② 각 채권의 채권자로서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 K(중복), L(중복), M(중복), N(중복), O(중복), P(중복), Q(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관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20. 5. 21.경 합계 371,979,871원을 배당받았고(배당비율 56.75%), 이후 추가로 2022. 11. 24.경 3,387,460원, 2023. 4. 20.경 2,038,905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원고 B, 원고 C의 F에 대한 채권

1) R는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카합303호 가압류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7. 25.경 원고 B에게 F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8. 6.경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 B는 관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0. 5. 21.경 623,333,257원을 배당받았고(배당비율 56.75%), 이후 추가로 2022. 11. 24.경 5,676,428원, 2023. 4. 20.경 3,416,628원을 각 배당받았다.

2) ① 주식회사 S은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3888호 용역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3.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1. 9.경 원고 C에 F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29.경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② T은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261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6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1. 10.경 원고 C에게 F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29.경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 C은 관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0. 5. 21.경 합계 2,552,479,360원을 배당받았고(배당비율 56.75%), 이후 추가로 2023. 4. 20.경 13,990,706원을 배당받았다.

다. F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F은 2020. 6. 8. 피고와 사이에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2.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23. 6. 2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F의 무자력

F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20. 6.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1) 원고 법무법인의 주위적 주장 및 원고 B, 원고 C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F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 2) 원고 법무법인의 예비적 주장 원고 법무법인은 F에 대하여 6억 2,4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F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7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 법무법인은 무자력인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U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F에 대한 위 매매 잔금 채무 중 일부금인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 도과로 모두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F의 채권을 정리하여 F의 자금 유통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 법무법인의 채권자대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F 채무의 병존적 인수를 규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F의 채권자들인 V 및 유한회사 W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잔금 상당인 7억 5,000만 원(= V에 대한 2022. 9. 22.자 및 같은 달 29.자 합계 3억 9,000만 원 대위변제 + 유한회사 W에 대한 2023. 2. 2.자 1억 6,000만 원 대위변제 + 유한회사 W에 대한 2023. 3. 3.자 2억 원 변제)을 지급함으로써 F에 대한 7억 5,000만 원 매매 잔금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 법무법인이 대위할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 법무법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인바,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무법인은 2020.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카합126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이미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법무법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3. 7. 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법무법인은,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의 매매예약에 의한 등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등기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6. 8.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4건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의 가등기와 관련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되고 본등기가 경로된 때에 비로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건부 계약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 후에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고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판결을 통해 등기를 이전받았으므로, 판결에 의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을 때에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원인, 경로일자, 경로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백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에 대상 부동산에 여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들이 경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볼 수 없고, ③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여 해당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법무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 법무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법무법인의 피보전채권 및 F의 무자력

앞선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더하여, 갑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의 2020. 6. 21.자 배당이 이루어진 직후 F의 원고 법무법인에 대한 채무액은 285,527,880원이었고, 이후 추가 배당은 합계 5,426,365원(= 2022. 11. 24.자 배당액 3,387,460원 + 2023. 4. 20.자 2,038,905원)에 불과하며, 위 2020. 6. 21.자 배당 이후에도 원고 법무법인의 F에 대한 위 1.의 가. 1)항 기재 ①, ② 각 채권의 지연손해금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법무법인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아울러 위와 같은 원고 법무법인의 F에 대한 채권액이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통해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에게 일부 청구로 구하고 있는 215,000,000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F의 무자력이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잔금으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F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 따라 F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7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법무법인 주장의 피대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 4항에 '후일 순천지원 J

사건의 추가배당결과 위 부동산등기부상의 하자가 모두 해소(말소)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고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특약사항 제3항)', '만일 위 추가배당을 통해서도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의 하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범위 내에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한 후 남은 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되, 부족금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 지급한다(특약사항 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F의 채권자들에게 F의 채무 이행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여지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갑가 제3, 16호증, 을 제1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2. 9.경 V에게 합계 3억 9,000만 원을 이체하고, 유한회사 W에게 2023. 2. 2.경 1억 6,000만 원, 2023. 3. 3.경 2억 원을 각 이체한 점, 위 V 및 유한회사 W은 관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20. 5. 21.자 배당표 기재상 F의 채권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20. 5. 21.자 배당이 이루어진 직후 F에 대한 V 및 유한회사 W의 각 나머지 채권액은 414,731,243원(= 채권액 합계 958,955,016원 - 2020. 5. 21.자 배당액 544,223,773원) 및 991,506,287원(= 채권액 합계 2,294,905,191원 - 2020. 5. 21.자 배당액 1,302,398,904원)으로서, V 및 유한회사 W의 F에 대한 위 각 나머지 채권액이 피고의 V, 유한회사 W에 대한 위 각 이체액을 상회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더하여, 갑가 제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V, 피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W 및 F과 사이에 채무인수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확인서 등 아무런 서면을 작성한 바 없는 점, 피고가 V와 유한회사 W에게 이체한 위 각 돈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V, 피고, 유한회사 W 등 사이에서 서로 이체된 돈이고, 그와 같은 순환적 이체 흐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의한 F 채무의 대위변제 이후 발생한 별개의 자금 흐름이라거나, 구두로 이루어진 별도 사후 약정에 의해 일어난 이체 내역이라는 취지로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가 F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22. 11. 16.경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V에 대한 2022. 9.경 3억 9,000만 원 대위 변제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등 채무인수로 인한 대위변제 발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앞선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F의 채무 인수를 위해 F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무자력인 F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 법무법인에게, 원고 법무법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잔금 7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2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B,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원고 C(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D이 원고 B 등의 F에 대한 채권 회수에 대해 포괄적, 전반적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점, 변호사 D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인 원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변호사 D이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그와 같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음을 고지 또는 통보하였을 것이므로, 원고 B 등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무렵 사해행위취소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 B 등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등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무렵 위 가처분신청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 B, 원고 C의 F에 대한 위 1. 나.의 1)항 및 2)항 각 기재 금전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20. 6. 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가)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F은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F의 채권을 모두 정리하여 F의 자금 유통 및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것이었기에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악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F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무법인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 법무법인의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원고 B,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희영

1) 원고 B, 원고 C은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F이 아닌 채권자인 위 원고들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기재 청구원인 등 전체 변론의 취지상 청구취지를 주문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